

## 6급 이하 승진심사계획 공고

### □ 배 경

- 승진 소요연수가 경과한 주무관급 공무원들의 승진을 통해 사기 진작 및 조직 활성화 도모

### □ 근거법령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0조(승진) 및 제40조의 3(승진심사)
-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3조 및 제34조의 3(보통승진심사위원회)
- 「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」 (훈령 제399호, 2019.12.1.)

### □ 승진규모 : 총 8명

승진심사 단위*	구 분	승진예정인원	승진심사 대상 인원**	비고
본부	전산6급	1명	3명	
문체부	행정8급	6명	12명	
문체부	행정8급 (시간선택제)	1명***	9명	

\* 행정직은 전 직급에 대하여 문체부 단위로 승진심사를 실시하고, 기술직 등 기타 직렬의 6급 이하로의 승진은 각 소속기관별 실시(문체부 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2항)

\*\* 승진후보자명부 상위자 순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5의 배수 범위내의 해당자

\*\*\* 시간선택제공무원 20시간 근무자의 승진 시 2명까지, 35시간 근무자의 승진 시 1명 승진 가능

### □ 승진심사방법

- 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 중 공무원임용령 별표5의 배수 범위 내 해당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 70%, 업무실적평가 20%, 기타 10%를 합산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결정

구 분	배 점
○ 승진후보자명부상 점수 환산	70점
○ 현직급 근무기간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 평가	20점
○ 기타(상훈, 징계, 업무역량 평가)	10점
합 계	100점

## □ 업무추진실적 평가

-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전 승진심사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구성된 '업무실적평가위원회'를 개최
  - 승진심사 대상자 개인별 현직급 근무기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근거로 평가

## □ 교육훈련시간 이수조건

- (근거)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(예규 제46호)
- (내용)
  - (의무 교육훈련시간) 산출기준일 기준,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\*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
  - \*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: (해당 계급 근무연수) × (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)

### < 대상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>

구분	일반직 4급(복수직) 이하(연구사 포함)			
	공통	예 외		
		전문경력관	관리운영직군	방호/운전/위생원
교육훈련시간	연간 100시간	연간 40시간	연간 40시간	연간 12시간

\* 산출기준일 :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 말일 현재  
(단,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함)

- (부처공통학습) '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' 또는 '해당 계급 근무연수 ×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'의 40% 이상은 부처공통학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

## □ 추진일정

- 승진심사계획 공지 : '20. 2. 26(수)
-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결과 공지 : '20. 3. 2(월) 전후
- 승진 임용 : '20. 3. 2(월) 전후